



【축산정책】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오리분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I. 사업개요

1. 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 모든 번식전문 농장을 설치·운영하여 건강한 자돈 공급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젓소 축종의 축사 총 5,150개소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도모

구분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2007	2008	2009		
오리	연간 회전율	5.8	5.6	5.7	5.7	매년 1월 중	연간 출하횟수 (오리협회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이후
【오리】	-	-	3,528	2,561	32,383
- 보조	-	-	1,058	768	9,716
- 융자	-	-	1,764	1,281	16,191
- 자부담	-	-	706	512	6,476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①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화 사업참여농가 및 전업농
 - ※전업농 기준 : 오리 5,000수 이상
 - ※「브랜드경영체」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를 말함
 - ※가축계열화 업체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 고시)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계열화 업체임
 -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 제외
 - ※종돈장·종계장·종오리장은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6.1.1 이후 축산업(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낙농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

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
- 오리 :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계란 세척기 등), 계란 냉장보관창고, 폐사축 처리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오리 축사 및 사육시설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자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 ※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 사업기간 : 2년차 사업(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2010년도 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개소)	사업비합계	사 업 비				
			예산액				
			계(100%)	보조(30%)	융자(50%)	지방비(-)	자부담(20%)
오리	5	2,561	2,049	768	1,281	-	512

주) 예산액은 1년차에 지원사업비의 50%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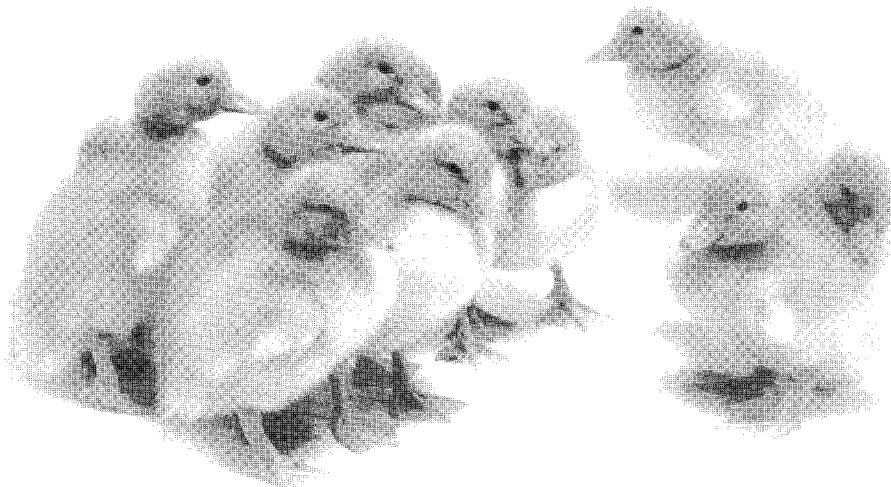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총사업비
오리	304천원/m ²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주) 지원한도액은 보조+융자의 합산액이며,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별 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오리)

□시·도(시·군)명:

□사업신청자명: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① 평시 사육수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수이상 • 20,000수이상~30,000수미만 • 10,000수이상~20,000수미만 • 5,000수이상~10,000수미만 	5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계열화 직영 신청 경우 현 직영 농장 사육수수만 해당
		40		
		30		
		20		
② 추진가능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4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 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30		
		20		
		0		
③ 교육실적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 20일이상~30일미만 •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5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40		
		30		
		20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지정 • HACCP 지정 신청 •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10		
		5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2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0		
⑥ 수상경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시·도 15		
		시·군·구 10		
		협회·농협 8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2009.1~2009.12월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총 득점: _____ 점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농가 작성용 -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자 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종계, 산란, 육계), (종)오리, 낙농(젖소)로 구분 • 사육형태 : 일관(), 비육(), 번식(), 기타()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두(수)	두(수)	두(수)	두(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2006	2007	2008	2009.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신축(), 개축(), 개보수()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신청 사업비: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규대비: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m)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① 축산업등록증 ②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 신용조사서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0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구분	세부계획	사업비											
		2009				2010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측사													
	소계												
내부시설 및 기자재													
	소계												
합 계													

주) 2년차로 사업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행 면적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m ²	m ²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m²)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용자)	천원
면적당 신청액 = (보조+용자) / 공사계획면적(m ²)	천원/m ²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m²)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2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비										B/A		
			계획	실적	%	계 획					실 적							
						계 (A)	보조	융자	지방	자담	계 (B)	보조	융자	지방	자담			
		○축사시설 :																
		○퇴비사 :																
		○관리사 :																
		○전기시설 :																
		○용수시설 :																
		소 계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